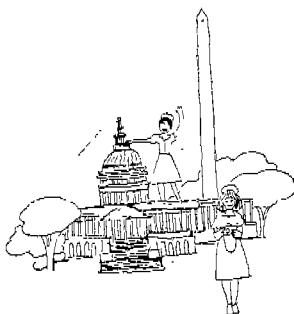


# 간호단독법의 필요성



김 주 회  
(한양대 간호학과 교수)

우리나라 법은 간호원에 대한 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과 함께 둘이 다루고 있다.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복지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법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여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차 간호원의 역할확대가 증대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진료가 중심인 사업이었지만 앞으로의 건강유지증진사업, 즉, 건강관리사업으로서의 전환점에서 본다면 염연히 건강사업은 과거의 진료사업의 성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즉, 진료중심체제에서 눈 의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었고 모든 의료인은 그러한 주임무를 하는 의사의 보조역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관리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간호원의 역할과 성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 의사처방집행자로써 간호가 아닌 간호직 접체공자, 예민한 관찰자, 대변자, 교육자, 상담자, 변화촉진자, 연구자, 행정관리자, 지역사회조직 개발자, 진료직접체공자 등 모두 독립적이며 의사의 보조가 아닌 협조자로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기능을 법에 제대로 표시하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보장을 받으므로써 전문적으로 써의 간호직의 원만한 발전과 국면이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써는 간호대상자를 정함에도 문제가 많으며 간호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이 법은 오래전에 정해진 과거 개념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며 시대가 지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기대에 발맞추기 위하여는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인은 법개정과 함께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열거하고자 한다.

1. 간호직은 의료법에 둑여있는 의료인 중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이 의료인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 직종 중 간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근무성격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간호원이 환자와 함께 항상 지켜야하는 청은 당직한다는 개념과는 훨씬 다른 뜻이 있다.

조산원이 간호원으로써 1년 조산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주는 면허이므로 같은 직종으로 본다면 간호원으로써 특수훈련 1년여를 받은 사람에게 모두 면허를 주어 특수훈련받은 분야에서 개

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초진원(初診院)이나 건강관리원(健康管理院) 가족계획시술원(家族計劃施術院) 등등.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상주하여야 하는 성격이 있다.

예를들면, 학교 양호실, 산업장 의무실, 보건지소, 가족계획실 등이다.

간호원 적정배치를 위한 적정수준을 정하는데에도 간호원의 역할과 근무성격상 환자와 24시간 같이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의료인으로써 환자의 단순한 수에 비례하도록 일괄처리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환자수 비례법이 아닌 환자종별과 평균 입퇴원기간을 고려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주장하지 말 의료법에 타의료인과 함께 다투어지는 한 이려한 특수성 고려가 보다 쉽지 않다고 본다.

2. 간호직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보다 더 자세히 명시하고 타 의료인과의 한계도 명확히 하며 보조역이 아닌 협조자로써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

앞에서 특성을 말했지만 의료체계상 많은 변화가 와서 진료보건행정에서 건강관리행정으로 변화하는 데 따른 각기 의료직의 특수업무와 간호원의 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간호원의 임무로 명시하여야 하겠다.

상병자의 단순한 간호와 친로의 보조로써 법을 끓어 놓는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간호인력의 잠재적 능력을 국민건강증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큰 힘을 잃게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것은 간호인력의 낭비로 오는 간호직의 의기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큰 손실이 된다고 본다.

3. 간호단독법을 만드는 데에는 같은 적종이면서 다르게 법으로 취급되므로 오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그 하나는 조산원이다. 조산원은 간호원이다. 다만 간호원으로 1년의 특수 교육훈련을 받

아 면허를 준 적종이다. 그렇다면 간호업무 종특수분야 간호원으로 인정함이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현행 의료법 56조의 규정에는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54조에는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함께 통합하여 간호원으로써 특수훈련을 1년여 받은 자에게 훈련받은 특수업무상의 면허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수분야 간호원들은 개업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활발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간호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예: 병지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는 유독 조산원만에게 개업의 권리가 주어졌지만 특수분야 간호원으로 규정한 보건간호원, 마취간호원, 정신간호원에 대해서는 특수훈련 1년을 거치되 특수업무 간호원으로 자격을 주도록만 되어있고 면허를 주지 않으며 특히 업무가 활발히 될 만한 시행령에서나 시행규칙이 서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형평을 잃은 점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간호보조원에 관한 법이다. 간호보조원은 이를 자체부터 간호원을 위한 적인 데 비해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마치 간호보조원이 간호원의 지휘감독없이도 일할 수 있는 단독적인 것 같은 느낌을 간호보조원에게 주기 쉽고 또 간호직의 특수업무 간호원, 간호원(일반), 간호보조원의 일, 연속선상의 교육훈련이나 자격기준을 허물어 뜨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의 큰 문제 하나로 현재 대두된 것이 간호원이 없을 시 간호원을 보조원으로 전원 대치시킬 수 있다는 의료법시행령(24조 제3항) 같은 보순이 발생한다고 본다.

간호원이 없는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간호원 T.O.를 간호보조원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하여 춤구멍을 터준 시행령이라고 보지만 법을 선용하려는 사

함만을 위하여 반드시는 안되며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위험한 면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다.

위와같은 이유에서 특수업무 간호원과 간호원, 간호보조원의 기능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비되어야 하며 서로의 업무한계와 협조체계가 법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때므로써 일반 국민들이 간호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합당한 간호를 합당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단독법의 필요성을 열거하여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간호단독법이 꼭필요한 때에는 또다른 부추적 이유가 있다.

간호법이 단독법으로써 될 때에는 지금 현재 의료법수준이라고 보지만 의료법 속에 의료진과의 보조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행법을 뺏어나서 단독법이 된다면 같은 수준의 법률에 해당하더라도 훨씬 월등한 수준의 법률에 속하게 된다고 보고 싶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점은 그러한 단독법에 따른 행정조직체계도 확대조정될 것이다.

또 임용규정도 보조적 역할자로써 항상 규제되어 오는 문제점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교육받은 만큼 상응한 직급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간호학사는 3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문대학 졸업자는 4급급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신분보장이 안되는 징급적 간호원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 또 보수규정도

고쳐져야 한다. 언제나 학생이 되어오는 제주당문제, 특진, 연구비 등을 간호원에게도 당연히 할당해야 한다.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진과 연구수당이 해당됨이 타당하다.

또 특수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간호원을 위하여서는 과거와 같이 한정호봉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균등하게 승진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의 보장이 되므로써 보다 좋은 질의 찬호를 받는 우리의 학생들과 보다 넓은 생산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질이라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호단독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을 고치려는 사람에 의해서 행동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독법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정부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간호협회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단독법이 안된다 하더라도 협행법상의 보충된 또는 미비된 법은 하루속히 고쳐지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우리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1. 대한민국 협행 법령집, 제23권
2. 이영자, “한국간호관계 법령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3. 김모임, “2차건강관리와 간호원의 역할” 서울시 지부 보수교육강의록

